

법령자료

※ 편집자 주 : 법무부에서는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인법시행령 등을 포함한 공증 관련 법령 일부의 제·개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현재 제정 또는 개정이 진행중인 공증 관련 법령의 입법예고 또는 법제처 심사를 마친 내용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입법예고된 법령의 경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으니, 최종적인 법령의 공포 및 시행 내용은 반드시 법무부 또는 법제처 홈페이지나 관보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제안이유

「공증인법」의 개정(법률 제9416호, 2009. 2. 6. 공포, 2010. 2. 7. 시행)으로 「공증인법」과 「변호사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증 관련 규정이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증인의 임명·인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며, 공증인 징계에 관한 사항을 「공증인징계위원회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던 것을 이 영에 모아서 규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증 관련 규정의 일원화 (안 제1조 및 제2조, 현행 제2조의2 삭제, 안 제3조, 제7조의2, 제36조 및 제37조

등)

공증 관련 규정이 일원화됨에 따라 목적 규정, 공증인의 표시에 관한 규정, 직인에 관한 규정, 작성자의 표시에 관한 규정, 합동사무소의 설치 절차에 관한 규정 등을 법률의 개정 취지에 맞게 정비함.

나. 공증인 임명·인가 절차의 규정(안 제1조의2 및 제1조의3 신설)

공증인으로 임명 또는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임명 및 인가 절차의 세부사항을 정함.

다.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지정 방식의 개선(안 제2조의3 신설)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을 별표에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새로 설립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대통령령이 개정될 때까지 의사록 인증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의사록인

증 제외대상법인을 고시하는 방식으로 개선함.

라. 공증인 재임명·재인가 절차의 정비

(안 제34조)

재임명이나 재인가 신청을 하려는 공증인은 임기 또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신청서를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재임명 또는 재인가를 한 경우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도록 함.

마. 대한공증인협회의 조직·운영에 관

한 사항의 정비(안 제39조, 안 제39조의2 신설, 현행 제40조, 제41조 삭제 및 안 제42조)

법률의 개정으로 공증협회가 대한공증인협회로 그 명칭이 변경되고, 임의 가입 단체에서 강제가입 단체로 변경됨에 따라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바. 공증인의 징계에 관한 사항의 규정

(안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신설)

공증인 징계 제도의 실효성 강화 등을 위하여 「공증인징계위원회 규정」에서 규율하던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공증인징계위원회 규정」을 폐지하고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공증인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이 영에서 정함.

대통령령 제 호

공증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증인법시행령”을 “공증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증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및 제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임명공증인 임명절차) ①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임명공증인으로 임명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임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3. 사무소의 설치 예정지를 적은 서류
4.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

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증인을 임명할 때에는 공증인 임명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증인임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임명번호 및 임명연월일
2. 임명공증인의 성명 및 주소
3. 사무소의 소재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공증인임명서를 발급하면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이하 “대한공증인협회”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조의3(인가공증인 인가절차) ① 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규약
2.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될 변호사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3.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될 변호사의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4. 사무소의 설치지 또는 예정지를 적은 서류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할 때에는 공증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증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인가번호 및 인가연월일
2. 인가공증인의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공증담당변호사의 성명 및 주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공증인가서를 발급하면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공증인의 표시 등) ① 공증인은 그 사무소(인가공증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간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임명공증인: 임명공증인의 성명을 나타낼 수 있는 공증인 ○○○사무소라고 적은 간판
 2. 인가공증인: 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았음을 나타내는 간판
- ② 인가공증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증인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2.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제3조 중 “공증인의 사무소, 법무법인의 주사무소 및 합동법률사무소의 사무소(이하 “공증사무소”라 한다)에는”을 “공증인은 그 사무소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공증인(법무법인과 합동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공증인”으로, “자필이력서”를 “자필이력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로, “소속 또는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를 “대한공증인협회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 또는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를 “대한공증인협회에”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작성자의 표시) 인가공증인은 공증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때 소속, 사무소의 소재지 및 명칭을 적고, 법 제15

조의3에 따라 신고된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담당변호사라고 표시한 뒤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 중 “수수료·일당·여비”를 “법 제7조에 따른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지정공증인의 사무소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촉탁”을 “법 제2조에 따른 촉탁(이하 “촉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의3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촉탁인”을 “촉탁을 한 자(이하 “촉탁인”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장”을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민사소송법 제519조제3호의 단서”를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27조제2항 또는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에게 제출한 인감증명서 기타의 증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를 “법 제27조제2항, 제56조의2제6항, 제59조, 제63조제4항, 제66조의2제4항, 제66조의5제3항·제4항 및 제66조의6제2항에 따라 공증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로 한다.

제17조 중 “수수료·일당 또는 여비의 개산액”을 “법 제7조에 따른 수수료, 일

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의 개략적 산정 금액”으로 한다.

제26조 중 “대리자모, 후임자모 또는 겸무자모라는”을 “대리자, 후임자 또는 겸무자로서 직무를 수행한다는”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법무부장관의 지시요구)”를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하고, 같은 조 중 “요구할 수 있다”를 “받아 공증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2조 중 “비치하고 이에 소속공증인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을 “갖추어 두고, 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임명공증인: 공증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인가공증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공증담당변호사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제33조 전단 중 “소속공증인이 법 제13조·제14조·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소속 공증인이 법 제13조, 제15조제1항·제3항(제15조의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4제2항 또는 제15조의8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재임명)”을 “(재임명 및 재인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증인”을 “임명공증인”으로, “1월전”

을 “3개월 전에, 법 제15조의8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후 재인가를 원하는 인가공증인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으로, “서면으로 재임명을”을 “서면으로 재임명 또는 재인가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증인의 재임명 또는 재인가를 한 경우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의 제목 “(임기만료후의 직무)”를 “(임기 또는 유효기간 만료 후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중 “재임명의 신청”을 “재임명 또는 재인가의 신청”으로,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재임명”을 “임기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재임명 또는 재인가”로 한다.

제36조 중 “공증인”을 “임명공증인”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중 “공증인”을 “임명공증인”으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대한공증인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 대한공증인협회는 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설립인가 또는 회칙변경인가를 신청하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칙
2. 회칙 작성에 관한 회의록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총회) ① 대한공증인협회는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일시, 장소 및 의제를 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한공증인협회는 법 제77조의10제2항에 따라 총회의 결의 내용을 보고할 때에는 그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 및 제4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의 제목“(공증협회의 건의 등)”을“(대한공증인협회의 건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공증협회”를 “대한공증인협회”로 한다.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공증인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법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등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44조(예비심사)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심의기일 전에 예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심사에 관하여 법 제85

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는 공증인의 직무성적, 직무위반의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 여부, 징계의 종류 및 징계의 정도를 정하여야 한다.

제46조(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① 간사는 징계사건의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44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참여한 간사는 심의기록을 작성하고 심사에 참여한 위원과 함께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7조(징계결정서의 작성)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심의에 참여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징계에 관한 의결 결과는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징계심의의 정지) 징계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하여야 한다.

제49조(징계위원회의 면직 의결절차)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결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85조의2, 제85조의3, 제85조의4, 제85조의7, 이 영 제44조제1항,

제46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공증인징계위원회 규정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단서 중 “공증사무소 설치

인가를 받은”을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은”을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증인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공증인법시행령</u>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 및 변호사법에 의한 공증인가법무법인(이하 “법무법인”이라 한다)과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이하 “합동법률사무소”라 한다)의 공증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u>공증인법시행령</u>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증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임명공증인 임명절차) ①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1조에 따라 임명공증인으로 임명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임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3. 사무소의 설치 예정지를 적은 서류
4.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증인을 임명할 때에는 공증인 임명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증인임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임명번호 및 임명연월일
2. 임명공증인의 성명 및 주소
3. 사무소의 소재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공증인임명서를 발급하면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법 제77조

<신 설>

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이하 “대한공증인협회”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조의3(인가공증인 인가절차) ① 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규약
2.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될 변호사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3.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될 변호사의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4. 사무소의 설치지 또는 예정지를 적은 서류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할 때에는 공증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증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인가번호 및 인가연월일
2. 인가공증인의 명칭

제2조(간판) 공증인의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에는 공증인 ○○ ○사무소라고 기재한 간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2조의2(간판) ① 법무법인은 주사무소에 공증인가 법무법인임을 나타내는 간판을, 합동법률사무소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임을 나타내는 간판을 각각 내걸어야 하며, 그밖의 다른 법률사무소는 “공증인가”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법무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증인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3. 사무소의 소재지

4. 공증담당변호사의 성명 및 주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공증인가서를 발급하면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조(공증인의 표시 등) ① 공증인은 그 사무소(인가공증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간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임명공증인: 임명공증인의 성명을 나타낼 수 있는 공증인 ○○○ 사무소라고 적은 간판

2. 인가공증인: 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았음을 나타내는 간판

② 인가공증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증인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삭 제>

제2조의3(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법인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직인) 공증인의 사무소, 법무법
인의 주사무소 및 합동법률사무소의
사무소(이하 “공증사무소”라 한다)
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직인을 비
치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자채용 등의 신고) ① 법
제23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법무법인과 합동법률사무소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보조자를
두고자 하는 때에는 보조자의 자필
이력서 및 신원진술서를 갖추어 소
속 또는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
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
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
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보조자의 호적등본을

제2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
인) 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
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
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
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
일 것
2.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제3조(직인) 공증인은 그 사무소에

제4조(보조자채용 등의 신고) ①

공증인
..... 자필이력서, 가족관계등
록부의 기본증명서
대한공증인협회에
....., <후단 삭제>

확인하여야 하며, 그 보조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이 보조자를 교체 또는 해고하거나 보조자가 사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 또는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작성자의 표시) ① 법무법인에서 공증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명칭을 기재하고, 공증사무 담당변호사가 “공증담당변호사”라고 표시한 뒤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사무소의 소재지 및 명칭을 기재하고, 공증사무 담당변호사가 “공증담당변호사”라고 표시한 뒤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소내의 게시) 사무소내에는 보기 쉬운 곳에 수수료·일당·여비의 표준액과 집무시간외라도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촉탁에 응한다는 뜻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3(사무소의 시설기준) 사무소의 시설기준 기타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촉탁의 거절의 경우) ① 공증인이 촉탁을 거절한 경우에 촉탁인

②
.....
..... 대한공증인협회에
.....
.....

제7조의2(작성자의 표시) 인가공증인은 공증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때 소속, 사무소의 소재지 및 명칭을 적고, 법 제15조의3에 따라 신고된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담당변호사라고 표시한 뒤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소내의 게시)
법 제7조에 따른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지정공증인의 사무소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법 제2조에 따른 촉탁(이하 “촉탁”이라 한다)

<삭 제>

제11조(촉탁의 거절의 경우) ①
촉탁을 한 자(이하 “촉탁인”이라 한

의 청구가 있으면 그 이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본인에 대한 통지) ① 공증인이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일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본인의 고용인이거나 동거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 3. (생략)

4. 민사소송법 제519조제3호의 단서에 규정된 사항의 기재유무

② (생략)

제14조(동시에 수개의 촉탁을 한 경우의 증명서) ① 공증인이 1인의 촉탁인으로부터 동시에 수개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 그 촉탁인이 법 제27조제2항 또는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에게 제출한 인감증명서 기타의 증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는 1부로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7조(수수료등 예납의 영수증) 공증인이 촉탁인에게 수수료·일당 또는 여비의 개산액을 예납시킨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

②

.....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의장

제13조(본인에 대한 통지) ①

1. ~ 3. (현행과 같음)

4.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동시에 수개의 촉탁을 한 경우의 증명서) ①

..... 법 제27조제2항, 제56조의2제6항, 제59조, 제63조제4항, 제66조의2제4항, 제66조의5제3항·제4항 및 제66조의6제2항에 따라 공증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수수료등 예납의 영수증)

..... 법 제7조에 따른 수수료,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의 개략적 산정 금액

제26조(대리자·후임자·겸무자의 제시) 공증인의 대리자·후임자 또는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겸무자는 그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대리자모, 후임자모 또는 겸무자모라는 뜻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30조(법무부장관의 지시요구) 공증인이 공증사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의심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공증인명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증인명부를 비치하고 이에 소속공증인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33조(면직사유등의 보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소속공증인이 법 제13조·제14조·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4조(재임명) ① 임기만료후 재임명을 원하는 공증인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 1월전에

제26조(대리자·후임자·겸무자의 제시)

..... 대리자, 후임자 또는 겸무자로서 직무를 수행한다는

제30조(법무부장관의 지시)

..... 받아 공증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2조(공증인명부)

..... 갖추어 두고, 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 임명공증인: 공증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인가공증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공증담당변호사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제33조(면직사유등의 보고)

..... 소속 공증인이 법 제13조, 제15조제1항·제3항(제15조의4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4 제2항 또는 제15조의8제1항

제34조(재임명 및 재인가) ①

..... 임명공증인 3개월 전에,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재임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제35조(임기만료후의 직무)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명의 신청을 한 공증인은 그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재임명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제36조(합동사무소) 2인이상의 공증인이 사무의 합리화 또는 품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7조(합동사무소의 설치절차) ① 공증인이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제39조(공증협회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 법 제77조의2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협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 제15조의8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후 재인가를 원하는 인가공증인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 서면으로 재임명 또는 재인가를

② (현행과 같음)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증인의 재임명 또는 재인가를 한 경우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임기 또는 유효기간 만료 후의 직무) 재임명 또는 재인가의 신청 임기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재임명 또는 재인가

제36조(합동사무소)

제37조(합동사무소의 설치절차) ① 임명공증인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대한공증인협회의 설립인가신청 등) 대한공증인협회는 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설립인가 또는 회칙변경인가를 신청하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경우 정관은 공증인 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작성하여 발기인의 과반수로 구성되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

2. 정관작성에 관한 회의록

② 공증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회의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공증협회의 설립인가신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77조의2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협회의 설립인가를 하는 때에는 공증협회인가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공증협회설립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인가번호 및 인가연월일
2. 공증협회의 명칭
3. 공증협회의 소재지
4. 기타 필요한 사항

<신 설>

1. 회칙

2. 회칙 작성에 관한 회의록

제39조의2(총회) ① 대한공증인협회는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일시, 장소 및 의제를 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제40조(공증협회의 정관변경인가신청 등) ① 법 제77조의2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협회가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이유서

2. 정관변경안

3. 정관변경에 관한 회의록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77조의2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협회의 정관변경을 인가한 때에는 공증협회인가대장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1조(공증협회설립인가의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공증협회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그 명칭·사무소의 소재지 및 설립연월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2조(공증협회의 건의 등) 공증협회는 공증사무와 공증제도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그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신 설>

한다.

② 대한공증인협회는 법 제77조의 10제2항에 따라 총회의 결의 내용을 보고할 때에는 그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제42조(대한공증인협회의 건의 등)
대한공증인협회

제43조(공증인징계위원회의 사무직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원) ① 법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등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44조(예비심사)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심의기일 전에 예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심사에 관하여 법 제85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는 공증인의 직무성적, 직무위반의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의 여부, 징계의 종류 및 징계의 정도를 정하여야 한다.

제46조(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① 간사는 징계사건의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44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참여한 간사는 심의기록을 작성하고 심사に関여한 위원과 함께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7조(징계결정서의 작성)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신 설>	<u>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u> ② <u>징계에 관한 의결 결과는 징계형 의자에게 송달하고, 관할 지방검찰 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u>
<신 설>	제48조(징계심의의 정지) <u>징계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사 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징 계심의를 정지하여야 한다.</u> 제49조(징계위원회의 면직 의결절차) <u>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결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85조의2, 제85조의 3, 제85조의4, 제85조의7, 이 영 제 44조제1항, 제46조 및 제47조를 준 용한다.</u>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 처리규칙 제정(안)

1. 제정이유

개정 공증인법(법률 제9416호, 2009. 2. 6. 공포, 2010. 2. 7. 시행) 제 81조 제3항에서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공증인의 사무취급에 관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사건의 처리절차와 방법 및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처분에 관하여 다시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사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이의신청 방식 및 처리절차 등 규정

- 1) 공증인의 사무취급에 관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촉탁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 2)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은 통상의 형사사건 등과 별개로 접수한 후 법조 또는 감찰전담 검사(이하 '담당 검사'라고 함)에게 배당하여 처리하도록 함

3) 담당 검사는 이의신청사건에 대해 해당 공증인의 사무취급이 공증 관계 법령에 위반되었는지 여부와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함

4)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은 각 해당 사유에 따라 '이유없음 또는 주의촉구, 경고, 징계사유 발생보고'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함

5)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의신청사건을 종결한 때에는 이의신청인 및 해당 공증인에게 처분결과를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처분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나. 법무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방식 및 처리절차 등 규정

- 1)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처분에 관하여 다시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이의신청인은, 처분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 2)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처분을 취소하고 스스로 해당 공증인에 대한 '주의촉구, 경고' 등의 처분을 하거나 공증인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도록 함
- 3)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사건을 종결한 때에는 이의신청인, 해당 공증인 및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법무부령 제 호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 처리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에 따라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공증인의 사무취급에 관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사건의 처리절차와 방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처분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사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의신청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이의신청

제2조(이의신청 방식) ① 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 대상 공증인(이하 ‘해당 공증인’이라 한다)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3조(이의신청사건 접수) 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통상의 형사·진정·내사사건과 별개로 접

수한 후 법조 또는 감찰전담 검사(이하 ‘담당 검사’라 한다)에게 배당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② 지방검찰청의 공증 담당직원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서식에 의한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이의신청사건 기록은 일반사건 기록과 별도로 관리한다.

③ 법무부장관이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 해당 공증인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첩한 사안에 대하여도 제1항 내지 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이의신청사건 조사) ① 담당 검사는 이의신청사건에 대해 해당 공증인의 사무취급이 공증 관계 법령에 위반되었는지 여부와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담당 검사는 이의신청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해당 공증인과 그 보조자 또는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관련 서류의 원본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담당 검사는 이의신청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죄혐의를 발견한 때에는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처리와 별도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검찰청검사장의 처분) 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의신청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이유없음 : 해당 공증인의 사무취급에 잘못이 없는 경우
2. 주의촉구 : 해당 공증인이 부적절하

게 직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79조 제1호)

3. 경고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증인의 지위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법 제79조 제2호)

4. 징계사유 발생보고 : 해당 공증인에게 법 제8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의신청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가 법 제3조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처분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의 고지) 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사건을 종결한 때에는 이의신청인 및 해당 공증인에게 처분결과를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근거서류 사본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처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인에 대해 처분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그 처분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다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기간) 이의신청사건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법무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방식) ① 법 제81조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이의신청인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9조(이의신청사건 처리 및 결과통보)

① 법무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처분을 취소하고 스스로 해당 공증인에 대해 제5조 제2호(주의촉구), 제3호(경고)의 처분을 하거나 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공증인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사건을 종결한 때에는 이의신청인, 해당 공증인 및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 2. 7.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공중사무 이의신청사건 접수 및 처리대장					
사 건 번 호	○○ 지방검찰청		20 년 제 호		
접 수 일 자	20 . . .				
이의신청인					
해당 공증인					
신청인의 자격	☐ 촉탁인 ☐ 이해관계인 ☐ 기타 ()				
이의신청 대상 공증사무의 종류	☐ 공정증서의 작성 ☐ 사서증서의 인증 (의사록 정관 인증 포함) ☐ 확정일자 부여 ☐ 집행문 또는 등본 발급 등 ☐ 기타 ()				
이 의 신 청 사 유 요 지					
담 당 검 사					
종 결 일 자	20 . . .				
처 분 결 과	☐ 이유없음 ☐ 주의촉구 ☐ 경고 ☐ 징계사유 발생보고				
처분결과 통보 및 보고 일시	이의신청인	20 . . .			
	해당 공증인	20 . . .			
	법무부장관	20 . .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					
비고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공증인서류보존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공증인법이 개정(법률 제9416호, 2009. 2. 6. 공포, 2010. 2. 7. 시행)됨에 따라 대한공증인협회가 공증서류 통합보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기준 및 허가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공증인이 사임하는 등의 경우 해당 공증인이 보존하고 있던 공증서류의 인수·인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존 대상 서류의 정의 규정 등 정비 (안 제2조, 제3조 제1항)

- 1) 개정 공증인법 제24조제1항에서 사서증서의 사본, 법인의사록 및 그 부속 서류 등이 서류 보존의 대상이 됨을 명백히 규정함에 따라 이 규칙상 보존 대상 서류에 관한 정의 규정에 사서증서의 사본 등을 추가함.
- 2) 개정 공증인법 제24조제2항에서 공증서류를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의하여 보존하는 서류를 정의규정에 추가함.

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의한 공증서류 보존 방법 등 신설(안 제3조의2 신설)

설)

개정 공증인법 제24조제2항에서 공증서류를 마이크로필름이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는 공증서류의 범위를 구체화 하고, 보존 방법 등을 규정함.

다. 공증서류 통합 보관 시설 기준 및 허가 절차 신설(안 제4조의2 신설)

개정 공증인법 제77조의9에서 대한공증인협회가 공증서류를 통합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증서류 통합보관 시설의 기준 및 허가 절차 등을 규정함.

라. 서류 인수·인계 처리 기준 신설(안 제7조 신설)

공증인 사임 등의 경우 해당 공증인이 보존하고 있던 공증서류 인수·인계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 및 절차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

법무부령 제 호

공증인서류보존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증인서류보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 제75조, 제77조의9제1항과 공증인법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보존 방법, 보존 장소, 보존 기간, 폐기, 서류인계기준, 서류 통합보관 시설 기준 및 허가절차와 사무소의 시설기준 기타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 서류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마이크로필름이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는 서류
3.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사서증서의 사본과 그 부속 서류
4. 법 제57조의2제6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선서인증서와 그 부속 서류
5.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그 부속 서류

6. 법 제66조의2제4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법인의사록과 그 부속 서류

7.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증인이 작성한 장부

제3조의 제목 “(서류의 보존방법)”을 “(서류의 보존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본과 정관”을 “사본, 정관과 법인의사록”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의한 보존)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증인이 마이크로필름이나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에서 정한 서류는 제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존하는 서류도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서류를 보존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변경 및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보존의 경위 및 절차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령에 따라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3. 필요한 경우 그 보존내용을 영상 또는 출력된 문서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보존된 자료의 멸실·훼손·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산정보처리 조직 등에 의하여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의 제목“(서류의 보존장소 등)”을“(서류의 보존 장소 등)”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서류 통합보관 시설 기준 및 허가 절차) ① 대한공증인협회는 법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공증 서류의 통합보관 시설 설치·운영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통합보관 시설 설치·관리계획서
 2. 서류 통합보관 시설의 위치도
 3. 서류 통합보관 시설의 구조도면
 4. 서류 통합보관 시설의 현황
 5.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 허가 여부 판단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통합보관 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의 시설 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의 제목“(서류의 보존기간)”을“(서류의 보존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존기간”을 “보존 기간”으로, “다음 해로부터”를 “다음해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존 하여야”를 “보존하여야”로 한다.

제6조의 제목“(보존기간만료서류의 폐기)”를“(보존 기간 만료 서류의 폐기)”로 하고, 같은 조 중 “보존기간”을 “보존 기간”으로,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을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서류 인수인계 처리 기준) ① 법제 75조에 따라 서류의 인계를 명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지리적 근접성, 공증인 임명 또는 인가 시기, 사무소 시설 현황, 공증업무 처리 건수 등을 고려하여 인계받을 공증인을 선정하고, 필요할 경우 복수의 공증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소속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 안에 공증인이 없는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서류를 인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소속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 안에 새롭게 공증인을 임명하거나 인가한 경우 해당 공증인에게 서류를 인계하고, 이로부터 2년 내에 같은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 지역에 다른 공증인을 임명하거나 인가한 경우 인계한 서류의 일부를 다시 인계할 수 있다.

④ 소속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 안에 공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시·군·구에 있는 공증인에게 서류를 인계한다. 다만, 같은 시·군·구에 공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 안의 다른 시·군·구의 공증인에게 서류를 인계한다.

⑤ 제4항 단서의 경우 같은 시·군·구에 공증인이 새롭게 공증인을 임명하거

나 인가한 경우 해당 공증인에게 서류를 인계하고, 이로부터 2년 내에 같은 시·군·구 지역에 다른 공증인이 임명되거나 인가받은 경우 서류의 일부를 다시 인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24조제2항 및 공증인법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서류의 보존과 폐기, 공증인사무소의 시설과 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u>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서류라 함은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서류,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그 부속서류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공증인이 작성한 장부를 말한다.</u>	<u>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 제75조, 제77조의9제1항과 공증인법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보존 방법, 보존 장소, 보존 기간, 폐기, 서류인계기준, 서류 통합보관 시설 기준 및 허가절차와 사무소의 시설기준 기타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u>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u> <u>1.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 서류</u> <u>2.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마이크로 필름이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는 서류</u> <u>3.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사서증서의 사본과 그 부속 서류</u>

제3조(서류의 보존방법) ① 증서의 원본,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과 정관은 표지를 붙이고 증서의 번호 또는 등부번호의 순서에 따라 각각 연철하여 두어야 한다.

② (생략)

<신설>

4. 법 제57조의2제6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선서인증서와 그 부속 서류

5.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그 부속 서류

6. 법 제66조의2제4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법인의사록과 그 부속 서류

7.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증인이 작성한 장부

제3조(서류의 보존 방법) ①
..... 사본, 정관과
법인의사록
.....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의한 보존)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증인이 마이크로필름이나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에서 정한 서류는 제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존하는 서류도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서류를 보존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변경 및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보존의 경위 및 절차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령에 따라 그 내용을 파악

제4조(서류의 보존장소 등) ① ~ ③
(생략)
<신설>

할 수 있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3. 필요한 경우 그 보존내용을 영상 또는 출력된 문서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보존된 자료의 멸실·훼손·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의하여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서류의 보존 장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서류 통합보관 시설 기준 및 허가 절차) ① 대한공증인협회는 법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공증 서류의 통합보관 시설 설치·운영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통합보관 시설 설치·관리계획서
2. 서류 통합보관 시설의 위치도
3. 서류 통합보관 시설의 구조도면
4. 서류 통합보관 시설의 현황
5.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 허가 여부 판단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통합보관 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의 시

제5조(서류의 보존기간) ① (생략)

② 제1항의 서류의 보존기간은 증서 원부·인증부·신탁표시부·확정일자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부에 대하여는 당해 장부에 최종의 기재를 한 다음 해로부터, 그 밖의 서류에 대하여는 그 서류를 작성한 다음 해로부터 기산한다.

③ 공증인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보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동안 이를 보존 하여야 한다.

제6조(보존기간만료서류의 폐기) 공증인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서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소속지방법검찰청검사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설 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서류의 보존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존기간
.....
..... 다음해로부터
.....

③
.....
..... 보존하여
.....

제6조(보존기간만료서류의 폐기)
..... 보존기간
.....
..... 소속지방법검찰청검사장
.....

제7조(서류 인수인계 처리 기준) ① 법 제75조에 따라 서류의 인계를 명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지리적 근접성, 공증인 임명 또는 인가 시기, 사무소 시설 현황, 공증업무 처리 건수 등을 고려하여 인계받을 공증인을 선정하고, 필요할 경우 복수의 공증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소속지방법검찰청 관할 구역 안에 공증인이 없는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서류를 인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소속지방법검찰청 관할 구역 안에 새롭게 공증인을 임명하거나 인가한 경우 해당 공증인

	에게 서류를 인계하고, 이로부터 2년 내에 같은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 지역에 다른 공증인을 임명하거나 인가한 경우 인계한 서류의 일부를 다시 인계할 수 있다. ④ 소속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 안에 공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시·군·구에 있는 공증인에게 서류를 인계한다. 다만, 같은 시·군·구에 공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 안의 다른 시·군·구의 공증인에게 서류를 인계한다. ⑤ 제4항 단서의 경우 같은 시·군·구에 공증인이 새롭게 공증인을 임명하거나 인가한 경우 해당 공증인에게 서류를 인계하고, 이로부터 2년 내에 같은 시·군·구 지역에 다른 공증인이 임명되거나 인가받은 경우 서류의 일부를 다시 인계할 수 있다.
--	--

공증인수수료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공증인법」이 개정(법률 제9416호, 2009. 2. 6. 공포, 2010. 2. 7. 시행)됨에 따라 선서인증의 수수료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규칙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 상한 인하(안 제20조제1항)

- 1) 종래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의 상한은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 상한의 10분의 5인 150만원이었음.
- 2) 공증 수요의 확대를 도모하고 공증에 대한 국민의 이용편의성 증대 측면에서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의 상한을 50만원으로 인하함.

나. 선서인증의 수수료 신설(안 제20조제2항)

- 1) 개정 공증인법 제57조의2에서 문서의 형식적 진정 성립 뿐만 아니라 내용의 진실성까지 인증하는 선서인증제도가 도입됨.
- 2) 내용의 진실성까지 인증하고, 촉탁

인으로 하여금 선서서에 따라 선서를 하게 한 후 인증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일반 사서증서 인증보다 공증인의 업무 난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사서증서 인증의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하도록 규정함.

다. 외국어로 기재한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 인하(안 제20조제3항)

- 1) 종래 외국어로 기재한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는 일반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의 2배를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음.
- 2) 공증인의 업무 난이도 및 외국의 입법례 등에 비추어 현행 수수료는 과도한 측면이 있어 종래 일반 사서증서 인증수수료의 2배를 가산하도록 하던 것을 배액을 더하도록 하여 수수료를 인하함.

라. 위임장 인증의 수수료 감액(안 제21조의2 신설)

- 1) 종래 위임장 인증에 대한 수수료는 5천원(제19조제1항, 제20조)으로 규정하였음.
- 2) 위임장 인증제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수료를 종래 5천원에서 3천원으로 감액하는 규정을 신설함.

마. 공증인 출장시 일당 인상(안 제29조)

- 1) 종래 공증인이 출장하여 직무를 행할 때에 그 일당을 4시간 이내는 3만원,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었음.
- 2) 공증인이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사무실을 비우게 되어 그에 상응하는 기회비용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므로 일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함.

바.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안 제34조)

- 1) 종래에는 촉탁인이 구·시·읍·면장의 증명서로써 지급의 자력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 공증인의 재량으로 수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 2) 수수료 면제 대상을 당사자 본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인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필요적 면제로 규정하여 사회적·경제적 약자가 보다 손쉽게 공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법무부령 제 호

공증인수수료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증인 수수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5항”으로, “수수료·일당 및 여비”를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이하 ‘수수료 등’이라고 함)”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를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장수등)”을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장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4매를”을 “4장을”로, “1매”를 “1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매로”를 “1장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매”를 각각 “1장”으로, “1매로”를 “1장으로”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채권담보물 가액등)”을 “(채권담보물 가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채권액중”을 “채권액 중”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지역권 설정의 경우) 지역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지역권 설정으로

인한 요역지의 가격 증가액과 승역지의 가격 감소액 중 많은 가액을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간내”를 “기간 내”로 한다.

제12조 중 “과실”을 “과실,”로 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규약등)”을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규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이 그 규약의 변경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작성 수수료의 10분의 5의 금액(1만6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6천원)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승인증서등의 작성)”을 “(승인증서 등의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제35조의 2”를 “제35조의2”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매 1시간에”를 “1시간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시간마다”를 “1시간마다 제1항의 수수료에”로 한다.

제17조 단서 중 “그중”을 “그 중”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여러사실의 증서)”를 “(여러 사실의 증서)”로 하고, 같은 조 중 “여러개”를 “여러 개”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위임장수취서”를 “위임장, 수취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요한”을 “소요된”으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주식회사의 설립경과등 조사·보고)”를 “(주식회사의 설립경과 등 조사·보고)”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한다”를 “하되,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57조의2제1항의 인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하되, 75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외국어로 기재한 사서증서의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에 배액을 더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집합건물법 제39조에 규정된 의사록 및 동법 제41조에 규정된 서면에 의한 결의서의 인증수수료는 각각 1만2천원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상법상의 정관등의 인증)”을 “(상법상의 정관 등의 인증)”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위임장의 인증) 위임장 인증의 수수료는 3천원으로 한다.

제22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23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57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1항의 경우에는 1만원을 더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2(우편에 의한 송달 수수료) 공증인법 제56조의4에서 정한 우편에 의한 송달 수수료는 우편법에 의한 우편요금에 4천원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증서의 정본등의 교부)”를“(증서의 정본 등의 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1매”를 “1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1매”를 “1장”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증서원본등의 열람)”을“(증서원본 등의 열람)”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특수한 사정하에서의 직무집행) 공증인이 촉탁인의 청구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또는 야간에 직무를 집행하거나, 촉탁인의 병상에서 직무를 집행한 경우의 수수료는 전조까지에서 정한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공증업무중지등의 경우)”를“(공증업무중지 등의 경우)”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공증인이”를 “공증인의”로, “중지한 때 또는 촉탁인 또는 열석자에 귀책되는 사유”를 “중지하거나, 촉탁인, 통역인 또는 참여인 등의 귀책사유”로, “제15조의 예에 의하여”를 “제15조에 따라서”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수수료의 액”을 “수 있는 수수료액”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일당,여비등)”을“(일당, 여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수료외에 다음 각호”를 “수수료 외에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당

4시간 이내는 5만원으로 하고,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

제29조제3호 중 “거마비”를 “자동차운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숙박비

실비액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수수료 등의 감액 불가) 공증인은 수수료 등을 임의로 감액할 수 없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촉탁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여러 사람이 함께 촉탁하는 경우 수수료 등은 각 촉탁인이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 제목“(공증력 없는 문서작성

의 수수료등)”을 “(공증력 없는 문서작성의 수수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에 공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공증인은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없다.

제32조 단서 중 “그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증인”을 “공증인”으로, “예외로 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수수료등의 청구)”를 “(수수료 등의 청구)”로 하고, 같은 조 중 “관하여 그 직무를 완결한 후가 아니면 수수료·일당 및 여비”를 “대한 직무를 완결하지 아니하면 제28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수수료 등의 면제) 당사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이거나 자치구 아닌 구의 구청장, 읍장, 면장, 동장의 증명서로써 지급의 자력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수수료 등의 지급을 면제한다.

제35조의 제목 “(수수료등의 예납등)”을 “(수수료 등의 예납 등)”으로 하고, 같

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수수료·일당 및 여비의 개산액”을 각각 “수수료 등의 개략적 산정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촉탁인”을 “공증인은 촉탁인”으로, “수수료·일당 및 여비의 개산액”을 “수수료 등의 개략적 산정금액”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수수료·일당 및 여비를”을 “수수료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규정”을 “관계 규정”으로, “계산을 명백하게 하여야”를 “계산의 근거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수수료등의 미지급의 경우)”를 “(수수료 등의 미지급의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중 “수수료·일당 및 여비를”을 “수수료 등을”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특례)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검사 또는 등기소장이 공증사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등은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수수료·일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7조제5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 (이하 ‘수수료 등’이라고 함).....
제2조(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 (생략)	제2조(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 (현행과 같음)
제3조(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장수 등) ①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증서의 장수가 4매를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매마다 500원을 더한다.	제3조(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장수 등) ① 4장을 1장
② 제1항의 장수는 1행 20자 24행을 1매로 한다. 다만, 1매에 미달한 것은 이를 1매로 본다.	② 1장으로 1장 1장으로
제8조(채권담보물 가액등) 채권의 담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목적물의 가액과 채권액 중 적은 가액을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제8조(채권담보물 가액 등) 채권액 중
제9조(지역의 가액) 지역의 가액은 지역으로 인하여 생기는 요역지의 가격의 증가액과 승역지의 가격의 감소액 중 많은 액에 의한다.	제9조(지역권 설정의 경우) 지역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지역권 설정으로 인한 요역지의 가격 증가액과 승역지의 가격 감소액 중 많은 가액을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한다.
제10조(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	제10조(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

① (생략)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은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기간내에 지급할 총가액에 의한다.

③ (생략)

제12조(부대적 목적의 경우) 과실 손해배상 및 비용이 법률행위에 부대되는 목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이를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2(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규약등)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기재된 규약의 변경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는 그 설정에 관한 수수료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같은 공증인사무소에서 증서로 작성된 규약에 있어서는 그 10분의 5의 금액(1만6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6천원)으로 한다.

⑤ (생략)

제14조(승인증서등의 작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와 공증인법 제35조의 2의 규정의 부기수료는 제2조의 구별에 의하여 각각 그 10분의 5로 한다.

1. ~ 4. (생략)

제15조(사실에 관한 증서) ①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에 관한 증서작성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기간 내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부대적 목적의 경우) 과실,
.....
.....
.....

제13조의2(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규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다만,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이 그 규약의 변경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규약의 설정에 관한 증서작성 수수료의 10분의 5의 금액(1만6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6천원)으로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승인증서 등의 작성)
각 호
..... 제35조의2
.....

1. ~ 4.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실에 관한 증서) ①
.....

수수료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의 실험 및 증서의 작성에 소요된 매 1시간에 2만5천원으로 한다.

②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1시간마다 5천원을 더한다. 다만, 1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를 1시간으로 본다.

제17조(관련된 사실에 관한 증서) 법률행위와 함께 이와 관련된 사실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5조의 예에 의한다. 다만, 그 액이 법률행위만에 관한 증서작성의 수수료의 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중 많은 액에 의한다.

제18조(여러사실의 증서) 관련되지 아니한 여러개의 사실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액은 각 사실에 관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19조(위임장등) ① 위임장수취서 또는 거절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있어서 작성에 요한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시간마다 3천원을 더한다. 다만, 1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를 1시간으로 본다.

③ (생략)

제19조의2(주식회사의 설립경과등 조사·보고) (생략)

제20조(인증행위) ① 인증의 수수료는 증서작성의 수수료의 10분의 5로

..... 1시간당

② 1시간마다 제1항의 수수료에

제17조(관련된 사실에 관한 증서)

제18조(여러 사실의 증서) 여러 개

제19조(위임장등) ① 위임장, 수취서

② 소요된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주식회사의 설립경과 등 조사·보고) (현행과 같음)

제20조(인증행위) ①

한다. 다만, 외국어로 기재한 사서증서의 경우에는 그 인증수수료의 2배를 가산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 설>

<신 설>

② 집합건물법 제39조에 규정된 의사록 및 동법 제41조에 규정된 서면에 의한 결의서의 인증수수료는 각각 1만2천원으로 한다.

제21조(상법상의 정관등의 인증) ①
· ② (생략)

<신 설>

제22조(사서증서의 확정일자) 사서증서에 확정일자를 붙이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증서의 장수가 4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매수 4매마다 100원을 더한다.

제23조(집행문 부여행위) 증서의 정본에 집행문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520조에서 준용되는 동법 제480조제2항, 제481조제1항 또는 제485조제1항의 경우에는 1만원을 더한다.

제23조의2(우편에 의한 송달수수료) 우편에 의한 송달수수료는 우편법에

하되,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서 삭제>

② 법 제57조의2제1항의 인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하되, 75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외국어로 기재한 사서증서의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에 배액을 더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집합건물법 제39조에 규정된 의사록 및 동법 제41조에 규정된 서면에 의한 결의서의 인증수수료는 각각 1만2천원으로 한다.

제21조(상법상의 정관 등의 인증)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위임장의 인증) 위임장 인증의 수수료는 3천원으로 한다.

제22조(사서증서의 확정일자).....

.....

..... <단서 삭제>

제23조(집행문 부여행위).....

..... 다만, 민사집행법

제57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1항의 경우에는 1만원을 더한다.

제23조의2(우편에 의한 송달 수수료) 공증인법 제56조의4에서 정한 우편

의한 우편요금액에 4천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4조(증서의 정본등의 교부) ① 증
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나 그 부속서
류의 등본 및 정관 또는 그 부속서류
의 등본의 교부에 관한 수수료는 1
매에 500원으로 한다. 다만, 공증인
법 제54조제1항(공증인법 제66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매에 200원으로 한다.

② (생 략)

제25조(증서원본등의 열람) (생 략)

제27조(특수한 사정하에서의 직무집
행) 공증인이 야간 또는 병상에서 직
무를 집행한 경우의 수수료는 각 해
당조에 정한 액에 10분의 3을 보탠
다.

제28조(공증업무중지등의 경우) 공증
인이 직무의 집행에 착수한 후 촉탁
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중지한 때
또는 촉탁인 또는 열석자에 귀책되
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완결하지 못
한 때에는 제15조의 예에 의하여 수
수료를 받는다. 다만, 수수료는 직무
집행을 완결한 경우에 받을 수수료
의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9조(일당,여비등) 공증인이 출장
하여 직무를 행할 때에는 촉탁인은
수수료외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

에 의한 송달 수수료는 우편법에 의
한 우편요금에 4천원을 더한 금액으
로 한다.

제24조(증서의 정본 등의 교부) ①
.....
..... 1장
.....
.....
..... 1장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증서원본 등의 열람) (현행과
같음)

제27조(특수한 사정하에서의 직무집
행) 공증인이 촉탁인의 청구에 따라
토요일, 공휴일 또는 야간에 직무를
집행하거나, 촉탁인의 병상에서 직
무를 집행한 경우의 수수료는 전조
까지에서 정한 수수료에 10분의 5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28조(공증업무중지 등의 경우) 공
증인의 중지하거
나, 촉탁인, 통역인 또는 참여인 등
의 귀책사유
제15조에 따라서
.....
수 있는 수수료액

제29조(일당, 여비 등)
.....
수수료 외에 다음 각호

담하여야 한다.

1. 일당

4시간이내는 3만원으로 하고,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만원으로 한다.

2. (생 략)

3. 항공임 또는 거마비
실비액

4. 숙박료

실비액

제30조(수수료등의 감액불가) 공증인의 수수료, 일당 및 여비의 액은 감할 수 없다.

제31조(촉탁인이 여러사람인 경우)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여러사람의 촉탁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일당 및 여비는 각 촉탁인이 연대하여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공증력 없는 문서작성의 수수료등) 공증인은 공증의 효력이 없는 문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수수료·일당 및 여비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증인이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3조(수수료등의 청구) 공증인은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그 직무를 완결한 후가 아니면 수수료·일당 및 여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제34조(수수료등의 면제) 촉탁인인 구·시·읍·면의 장의 증명서로써 지급의 자력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공증인은 수수료·일당 및 여비의 지급을 면제할 수 있다.

1. 일당

4시간 이내는 5만원으로 하고,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

2. (현행과 같음)

3. 자동차운임

4. 숙박비

실비액

제30조(수수료 등의 감액 불가) 공증인은 수수료 등을 임의로 감액할 수 없다.

제31조(촉탁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여러 사람이 함께 촉탁하는 경우 수수료 등은 각 촉탁인이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공증력 없는 문서작성의 수수료 등)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에 공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공증인은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없다. 공증인의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수수료 등의 청구) 대한 직무를 완결하지 아니하면 제28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 등

제34조(수수료 등의 면제) 당사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이거나 자치구 아닌 구의 구청장, 읍장, 면장, 동장의 증명서로써 지급의 자력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제35조(수수료등의 예납등) ① 공증인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수수료·일당 및 여비의 개산액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촉탁인은 예납에 갈음하여 수수료·일당 및 여비의 개산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③ 촉탁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일당 및 여비의 개산액을 예납 또는 공탁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촉탁을 거부할 수 있다.

제36조(계산서의 교부) ① 공증인은 촉탁인이 수수료·일당 및 여비를 지급한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계산서에는 각 항목별로 이 규칙의 관계규정을 인용하여 그 계산을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제37조(수수료등의 미지급의 경우) 촉탁인이 수수료·일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증서의 정본·등본 및 집행문의 교부를 거절할 수 있다.

제38조(특례) 검사 또는 지방법원, 등기소장인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수수료·일당 및 여비는 납부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이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수수료 등의 지급을 면제한다.

제35조(수수료 등의 예납 등) ①
..... 수수료 등의 개략적 산정금액
.....

②
..... 수수료 등의 개략적 산정금액
.....

③ 공증인은 촉탁인
..... 수수료 등의 개략적 산정금액
.....

제36조(계산서의 교부) ①
..... 수수료 등을
.....

②
..... 관계 규정 계산의 근거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

제37조(수수료 등의 미지급의 경우)
..... 수수료 등을
.....
.....
.....

제38조(특례)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검사 또는 등기소장이 공증사무를 대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등은 수입인지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공증인의정원및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공증인법의 개정(법률 제9416호, 2009. 2. 6. 공포, 2010. 2. 7. 시행)으로 공증 관련 규정이 일원화되어 종래 임명공증인에게만 적용되던 공증인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 인가공증인에게도 적용됨에 따라 공증인의 정원을 새롭게 규정하는 한편, 일부 문구 등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증인 정원 규정의 개정 (별표 1)

공증인법의 개정으로 공증 관련 규정이 일원화되어 임명공증인뿐 아니라 인가공증인에게도 공증인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각 지방검찰청 소속 임명공증인 및 인가공증인의 정원을 새롭게 정함.

나. 공증인임명·인가신청서 서식 규정 (안 제2조의2,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개정 공증인법 제11조제2항,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공증인 임명 또는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의 서식을 규정함.

다. 개정 공증인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안 제3조제1항, 별표 2)

개정 공증인법에서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인가공증인’으로 정의함에 따라 변호사법을 인용하고 있는 종전의 규정을 개정법에 맞게 수정하고, 행정구역명 변경을 반영하여 별표 2의 ‘직할시’를 ‘광역시’로 개정함.

라. 공증인이 납부할 신원보증금 증액 (별표 2)

공증인이 납부할 신원보증금액은 1986년 개정된 이후 증액되지 아니하여 이를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어 23년만에 이를 증액함.

법무부령 제 호

공증인의정원및신원보증금에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증인의정원및신원보증금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공증인임명·인가신청서) 법 제11조제2항,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공증인 임명 또는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그 구성원”을 “인가공증인은 그 공증담당변호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인가공증인 현원이 이 규칙에 의한 인가공증인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의한 정원과 동일하게 될 때까지 그 초과된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신원보증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원보증금을 납부한 공증인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2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증액된 신원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제3조제2항에 따라 예금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하여야 한다.

[별표 1]

각 지방검찰청소속 공증인의 정원(제2조 관련)

지방검찰청	정 원	
	임명공증인	인가공증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2인	89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3인	3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4인	7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3인	1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3인	1인
의정부지방검찰청	3인	6인
인천지방검찰청	6인	9인
수원지방검찰청	10인	17인
춘천지방검찰청	3인	1인
청주지방검찰청	3인	3인
대전지방검찰청	5인	8인
대구지방검찰청	7인	9인
부산지방검찰청	7인	11인
울산지방검찰청	3인	2인
창원지방검찰청	4인	5인
광주지방검찰청	6인	9인
전주지방검찰청	3인	4인
제주지방검찰청	1인	1인

[별표 2]

공증인의 신원보증금의 액(제3조 관련)

사무소의 위치	신원보증금의 액
서울특별시에 사무소를 두는 자	500만원
광역시에 사무소를 두는 자	300만원
기타의 곳에 사무소를 두는 자	200만원

※편집자 주 : 지면관계상 서식 등은 생략하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동 규칙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지식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3조(신원보증금의 액등) ① 법 제 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신원보증금의 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그 구성원 1인마다 별표 2에 규정한 액의 신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조의2(공증인임명·인가신청서) 법 제11조제2항,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공증인 임명 또는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신원보증금의 액등) ① 인가공증인은 그 공증담당변호사 ②·③ (현행과 같음)

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공증인법」이 개정(법률 제9416호, 2009. 2. 6. 공포, 2010. 2. 7.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선서인증제도의 서식에 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규칙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서인증과 관련된 서식 신설(안 제 27조의2 신설)

개정 공증인법 제57조의2에서 문서의 형식적 진정 성립 뿐만 아니라 내용의 진실성까지 인증하는 선서인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선서서(별지 제33의2호서식)’, ‘선서인증문(별지 제34의2호, 제35의2호서식)’ 서식 등을 신설함.

나.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서식 정비

이 규칙 개정 이후 보증에 관한 민법의 특례를 정하는 「보증인 보호를 위

한 특례법」이 제정(법률 제8918호, 2008. 3. 21. 공포, 2008. 9. 22. 시행)되고,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428호, 2005. 3. 31. 공포, 2006. 4. 1. 시행)되는 등 관련 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서식상 보증인의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이익 상실의 사유를 ‘파산선고, 화의절차개시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었을 때’로 개정(별지 제25의2호서식 등)함.

다. 우편송달보고서 개선

보충송달, 유치송달의 대상자를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규정에 맞게 변경하고, 송달 불능시 사유 기재란을 추가하는 등 별지 제14호서식을 송달 관련 실무례와 민사소송법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함.

라. 대리촉탁시 위임장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단축(안 제14조제3항)

대리촉탁시에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장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현행 ‘6월’에서 ‘3월’로 단축함.

마. 서식 규격 정비

별지 서식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규격(210mm×290mm)에 맞게 정비함.

바. 기타 서식 개선

서식의 일련 번호를 다른 법령의 예에 맞게 개선하고(별지 제24의2호 서식

등), 일부 서식상 누락되어 있는 공증인의 소속 및 서명날인 기재 부분을 보완(별지 제17호, 제34호서식 등) 함.

법무부령 제 호

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공증인의 사무소, 법무법인의 주사무소 및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이하 “공증사무소”라 한다)에서는”을 “공증인은”으로 한다.

제3조 중 “공증사무소에서”를 “공증인이”로, “서식사용”을 “서식 사용”으로, “사용횟수등을”을 “사용 횟수 등을”로 한다.

제4조 중 “공증사무소”를 “공증인”으로 한다.

제5조 중 “공증사무소에는”을 “공증인은”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용지의 규격등)”을 “(용지의 규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증사무소에서”를 “공증인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공증

촉탁서용지중 용지끝”을 “공증촉탁서용지 중 용지 끝”으로, “5밀리미터”를 “5밀리미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공증사무소에는”을 “공증인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증사무소에서는”을 “공증인은”으로, “기재하고, 공증서류검열자의 확인을 받아야”를 “기재하는 등 시정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그 시정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무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재검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중 “공증사무소의 장부에는”을 “공증인은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에”로, ““상동” “위와같음””을 ““상동”, “위와 같음””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증사무소에서”를 각각 “공증인이”로 한다.

제11조 중 “공증업무처리현황은 매월말을”을 “공증인은 공증업무처리현황을 매월말”로, “관할 또는 소속”을 “소속”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공증을”을 “공증인이 공증을”로, “공증인 또는 공증담당변호사가”를 “공증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증명서에”를 “공증인이 증명서에”로, “대리인”을 “대리인의 신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촉탁인이”

를 “공증인은 촉탁인이”로, “경우에는 공증촉탁서의 기재란중”을 “경우 공증촉탁서의 기재란 중”으로, “내용등을”을 “내용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한 때”를 “아니한 각”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별지 제10-1호서식 내지 별지 제10-4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별지 제10의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6월이내”를 “3월 이내”로 한다.

제15조 중 “공증인 또는 공증담당변호사가”를 “공증인이”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서명날인용지) 공증인이 공정증서·인증서 및 그 정본·등본을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서 정한 서명날인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의 제목“(통지서등)”을“(통지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3일이내”를 “3일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우편에 의한 송달신청”을 “공증인법 제56조의4에 의한 우편송달”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별지 제16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으로, “공증인 또는 공증담당변호사가”를 “공증인이”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작성하여야”를 “작성되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집행

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작성자의 서명날인부분”을 “공증인이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작성자의 서명날인”으로 한다.

제21조 중 “수수료등을”을 “수수료 등을”로 한다.

제23조 중 “촉탁인·대리인·통역인 또는 동의인등을”을 “촉탁인·대리인·통역인·참여인 또는 동의인 등을”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별지 제24-1호서식”을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4-2호서식”을 “별지 제24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선서인증) 선서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표지와 제33의2호서식에 의한 선서서를 사서증서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34의2호서식 또는 별지 제35의2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사서증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제2항 중 “공증사무소에는”을 “공증인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별지 제37호서식”을 “별지 제37호 또는 제37의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증사무소에는”을 “공증인은”으로 한다.

제5조(일자인의 비치) 공증사무소에
는 별도 2에 따라 조제한 확정일자
인과 별도 3에 따라 조제한 신탁표
시일자인을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용지의 규격등) ①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사무소에서 사용
하는 서류용지의 규격은 별도 4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용지는 흰색바탕에 흑색
으로 이를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증촉탁서
용지중 용지끝의 좌·우 및 하단은
폭 5밀리미터의 테두리를 청색으로
인쇄하여야 한다.

제8조(공증서류검열부) ① 공증사무
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증
서류검열부를 조제하여 비치하고,
공증서류검열시 이를 검열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 공증사무소에서는 검열결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한 뒤 제
1항의 공증서류검열부에 시정요지
를 기재하고, 공증서류검열자의 확
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제9조(장부의 기재) 공증사무소의 장
부에는 증서번호별로 소정사항을 구
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상동”
“위와 같음”과 같이 약식으로 기재하

제5조(일자인의 비치) 공증인은

제6조(용지의 규격 등) ① 공증인이

②
..... 공증촉탁서용지
중 용지
5밀리미터

제8조(공증서류검열부) ① 공증인은

② 공증인은
.....
기재하는 등 시정조치를 한 후 그 결
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③ 법무부장관은 그 시정조치가 미흡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무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재검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장부의 기재) 공증인은 영 제
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에
..... “상동”
“위와 같음”

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서류의 편철) ① 공증사무소에서 보존하는 공정증서원본철은 공정증서원본·촉탁서·촉탁인확인증명서사본·대리권증명서류·통지서 및 우편송달보고서등의 순서로 편철하여야 한다.

② 공증사무소에서 보존하는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은 사서증서인증서사본·촉탁서·촉탁인확인증명서사본 및 대리권증명서류등의 순서로 편철하여야 한다.

제11조(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 공증업무처리현황은 매월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공증촉탁서) ① 공증을 촉탁 받은 경우에는 촉탁인 및 보조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증촉탁서에 소정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촉탁인·대리인 확인란에 공증인 또는 공증담당변호사가 이를 확인한 뒤 소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증명서에 의하여 촉탁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사본을 공증촉탁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촉탁인이 동시에 수개의 촉탁을 한 경우에는 공증촉탁서의 기재란중 공통적으로 해당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와 같음”이라고 표시하

제10조(서류의 편철) ① 공증인이

② 공증인이

제11조(공증업무처리현황보고) 공증인은 공증업무처리현황을 매월말
소속

제12조(공증촉탁서) ① 공증인이 공증을

..... 공증인이

② 공증인이 증명서에
대리인의 신원

③ 공증인은 촉탁인이
경우 공증촉탁서의 기재란 중

고, 공증촉탁서에 별지를 첨부하여
증서번호·촉탁인 및 법률행위의 내
용등을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공증촉탁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때 증서마다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야 한다.

제14조(위임장) ①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1호서식 내지 별지 제
10-4호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제출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증명서
는 발행일부터 6월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제15조(면식부) 공증인 또는 공증담
당변호사가 촉탁인과 면식이 있어
촉탁인 확인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소정사항을 기재한 뒤 별도
로 첩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서명날인용지) 공정증서·인
증서 및 그 정본·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 작성자의 서명날인 용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통지서등) ① 대리인의 촉탁
에 의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때에
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3일이
내에 본인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② (생 략)

..... 내용
등을

④
..... 아니한 각

제14조(위임장) ①
.....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별지 제10의
4호서식

② (현행과 같음)

③
..... 3월 이내

제15조(면식부) 공증인이

제16조(서명날인용지) 공증인이 공정
증서·인증서 및 그 정본·등본을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에 정한 서명날인 용지를 사용하여
야 한다.

제17조(통지서 등) ①
.....
..... 3일 이내

② (현행과 같음)

③ 공증인이 우편에 의한 송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우편송달보고서를 봉투이면에 부착하고, 봉투표면에 “특별송달”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8조(신청서) ① 촉탁인이 집행문부여신청등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소정사항을 기재하게 한 뒤 공증인 또는 공증담당변호사가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9조(집행문) ① 집행문은 공정증서정본 뒤에 별지 제17호서식을 첨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작성자의 서명날인부분 밑에 집행문을 부여하였다는 취지와 그 부여한 연·월·일을 기재한 뒤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1조(계산서) 수수료등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계산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을 촉탁인에게 교부하고, 1통을 계산서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관계자의 표시) 관계자의 표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촉탁인·대리인·통역인 또는 동의인등을 기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25조(어음공정증서) ①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1호서식에 의한 용지에 어음을 우측상단으로부터 세로로 길게 부착

③ 공증인법 제56조의4에 의한 우편송달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신청서) ① 별지 제16호서식 공증인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집행문) ① 작성되어야

② 공증인이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작성자의 서명날인

제21조(계산서) 수수료 등을

제23조(관계자의 표시) 촉탁인·대리인·통역인·참여인 또는 동의인 등을

제25조(어음공정증서) ① 별지 제24호서식

하여야 한다.

② 관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24-2호서식의 관계자표시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뒤 별지를 첨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사서증서등본의 인증) ① (생략)

② 공증사무소에는 제1항의 인증서 사본을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29조(법인의사록의 인증) ① 법인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표지를 의사록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의사록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증사무소에는 제1항의 인증서 사본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증촉탁서,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 진술서,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을 차례로 철한 뒤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② 별지 제24호의2서식

제27조의2(선서인증) 선서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표지와 제33의2호서식에 의한 선서서를 사서증서 앞에 첨부하고, 별지 제34의2호서식 또는 별지 제35의2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사서증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사서증서등본의 인증)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증인은

제29조(법인의사록의 인증) ①

..... 별지 제37호 또는 제37의2호서

② 공증인은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정관의 인증) ①정관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정관 원본 2통을 제출하도록 하여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인증서의 표제앞에 “정관”이라고 표시한 뒤 이를 정관 앞에 부착하고,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인증문을 정관 뒤에 첨부하되, 1통은 촉탁인에게 교부하고, 1통은 공증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1조(영문사서증서의 인증) ① (생략)

② 공증사무소에는 제1항의 인증서 사본을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32조(사서증서 사본의 영문인증)

① (생략)

② 공증사무소에는 제1항의 인증서 사본을 사서증서인증서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30조(정관의 인증) ①

공증인이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영문사서증서의 인증)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증인은

제32조(사서증서 사본의 영문인증)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증인은

공증인 직무교육 지침 제정(안)

1. 제안이유

임명공증인 및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 변호사는 임명 또는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증인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 개정 공증인법 제15조의10 규정에 따라 법무부 훈령으로 「공증인 직무교육 지침」을 제정하기 위함.

법무부훈령 제 호

공증인 직무교육 지침 제정(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증인법 제15조의10 규정에 따른 공증인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 대상자) 공증인 직무교육 대상자(이하 ‘교육 대상자’라고 한다) 공증인법 제15조의10 규정에 따른 임명공증인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된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로 한다.

제3조(교육시간) 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4조(교육담당자) 공증인에 대한 직무교육은 법무부 소속 검사 또는 대한공증인협회의 관련 임원이 담당한다. (기타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이 추천한 자)

제5조(교육내용) 공증인에 대한 직무교육은 공증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과 실무에 관한 교육을 그 내용으로 한다.

제6조(교육일자 통지) 법무부장관은 공증인법 제11조, 제15조의2 규정에 따른 공증인 임명 또는 인가시 교육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교육일자를 지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